

〈踏查報告〉

農村의 休耕現象에 관한 事例調查: 全北 長水郡 한 村落을 대상으로

大學院 踏查班*

《차 례》

- | | |
|--------------------|----------------|
| 1. 序 論 | 3. 調查地域의 休耕化樣相 |
| 1) 調查의 背景과 目的 | 1) 休耕地 現況 |
| 2) 調查地域의 概觀 | 2) 休耕地 發生要因 |
| 2. 韓國農村의 變化樣相과 休耕化 | 3) 事例家口 考察 |
| 1) 農村의 變化樣相 | 4. 要約 및 結論 |
| 2) 休耕化樣相과 그 發生要因 | |

1. 序 論

1) 調查의 背景과 目的

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농촌 역시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의 구조적 변화에는 여러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겠지만 지난 30여년간에 나타난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인구의 절정기이던 1967년 농가호당 경지면적과 1.0ha 미만의 농가비율이 각각 0.91ha, 67.4%인데 비해 1989년 현재에는 각각 1.20ha, 62.0%으로 나타나 여전히 경영규모에 있어서 소농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간의 인구감소 정도에 비해 農業의 構造改編은

사실상 미약한 형편이다. 이처럼 한국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대외개방압력으로 농업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어, 한국 농업 및 농촌의 장래는 새로운 정책전환이 없는 한, 매우 어둡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한국 농업 및 농촌의 저발전을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성격에서도 출된 필연적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한다. 즉, 한국자본주의가 성장하는 동안 低農産物價格政策을 통해 농업부문의 수탈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농업이 자본제적 성장을 억제받아 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자본주의의 성격변화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농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러한 한국자본주의의 성격변화는 자본의 운동법칙때문에 혹은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종속적 지위때문에 쉽

* 이 보고서는 1992년 7월에 실시되었던 대학원정기답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답사와 보고서작성의 지도는 朴英漢 교수께서 하셨다.

보고서의 작성과 정리는 박사과정에 있는 曹永國을 비롯하여 劉煥宗, 文순喆, 具東會 등이 참여하였으며, 자료정리는 曹彰鉉, 吳尙學, 金智演 등이 하였다. 예비조사에는 成正昌과 南基包가 수고하였으며, 자료조사에는 상기자의 朴培均, 李康源, 盧惠정, 洪明杓, 都景善, 陳鐘憲, 楊東善, 孫正烈, 李政勳, 文美成, 鄭玉珠, 李政協 등이 참가하였다.

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 및 농업 피해를 전적으로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특히 대외종속적 성격으로 규정되는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에서 찾는 데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적어도 농업 및 농촌에서 나타나는 제 변화는 자본주의의 성격을 논하기 이전에 서구의 경험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며, 상당부분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30여년에 불과한 산업화의 역사가 농촌으로 하여금 그 변화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였다는 점이다. 우리가 여기서 고찰하고자 하는 休耕現象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미 독일을 비롯한 선진 여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광범위한 휴경화의 진전은 본격적인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농촌변화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나타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야기되고 있다. 얼마전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¹⁾ 우리나라의 휴경지 면적은 87년 19.8천ha로 전체경지면적의 0.9%이던 것이 91년 현재 휴경면적은 67.5천ha로 총경지면적의 3.2%에 이르러, 여건변화가 없는 한, 휴경지가 본격적으로 발생될 시기에 달한 것 같다.

기존의 많은 연구가 휴경지발생 혹은 발생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여 왔지만, 휴경지발생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 메카니즘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연구부진은 휴경지가 최근에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과 정부차원에서 휴경지에 관한 통계가 최근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휴경지발생은 향후에도 더욱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오늘날 한국의 농촌, 농업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지표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

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본 조사는 이와 같은 최근의 휴경지 발생에 대해 본격적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의 의미로서 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사용되는 '休耕地'는 농경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일년동안에 한번도 경작되지 않는 토지로 규정하며, 社會的 休耕地의 관점에서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²⁾ 또한 현재 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휴경지를 파악하여 향후 이용의사의 유무를 무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부에서 나타나는 '植木現象'도 집약적 토지이용이 아니라고 보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휴경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조사지역은 全北 長水郡 繁巖面 紗巖里이며 조사는 1992. 7.16-7.18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조사보고서는 조사직전에 행정당국에 의해 작성된 휴경지자료와 農地原簿 및 가구설문지를 주자료로 하여 정리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한국농촌의 전반적인 변화양상과 휴경화 경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기초로 조사지역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調查地域의 概觀

長水邑에서 19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조사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이 진입로를 약 4km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 조사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외부와의 통행로는 이 진입로 뿐이며, 마을안까지 연결하는 교통편이 없어 외부로의 연결이 불편한 지역이다. 면소재지는 조사마을에서 약 7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면소재지에서 19번 국도를 따라 4km 정도 더 남쪽으로 내려 가면 남원시와 연결되는 울림픽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 군소재지인 長水邑과 南原市는 조사마을로부터 거의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나 시외버스가 자주 다니는 남원으로의 통행이 오히려 잦다.

1) 서울신문, 1992. 5. 14일자 기사 참조.

2) 따라서 대도시주변부에서 용도전환이나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경작이 되지않는 투기적 목적의 경작방기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Sinclair, R. J., 1967, "Von Thunen and urban sprawl,"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7, 7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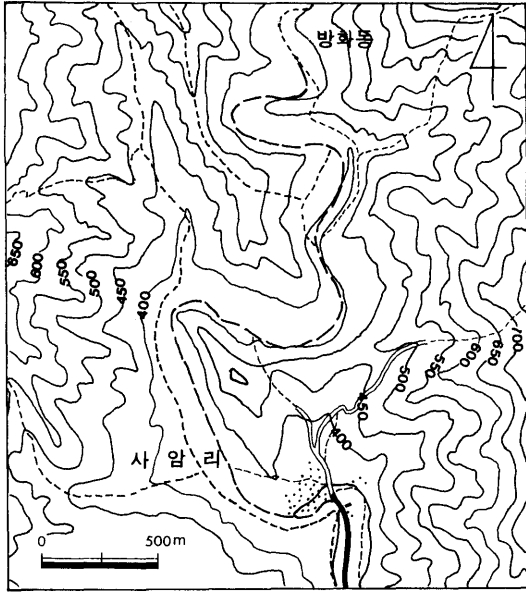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마을의 개략도

조사마을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접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전형적 산간마을로서 경지와 촌락은 계곡의 양쪽으로 형성된 좁은 평지에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경지에서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경지규모도 매우 영세하여 일찍부터 인구이출이 매우 극심하였다. 논과 밭의 비율은 약 6:4 정도이다.

조사지역이 속한 반암면 전체 통계를 살펴보면 반암면은 1966년 12,740명에서 1990년 4,334명으로 25년동안 인구가 1/3로 줄어 들었다. 이러한 인구변화 수치는 전국 농촌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조사마을은 최근 토지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는데 마을 북쪽 방화동에 休養地의 造成이 그것이다. 이 여파로 많은 논과 밭이 휴양지에 수용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수의 가구가 외지로 이주해 방화동일대 자연부락이 거의 소멸되었다. 휴양지의 조성은 장수군의 지역개발을 위한 관광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도로포장 및 휴양시설 일부를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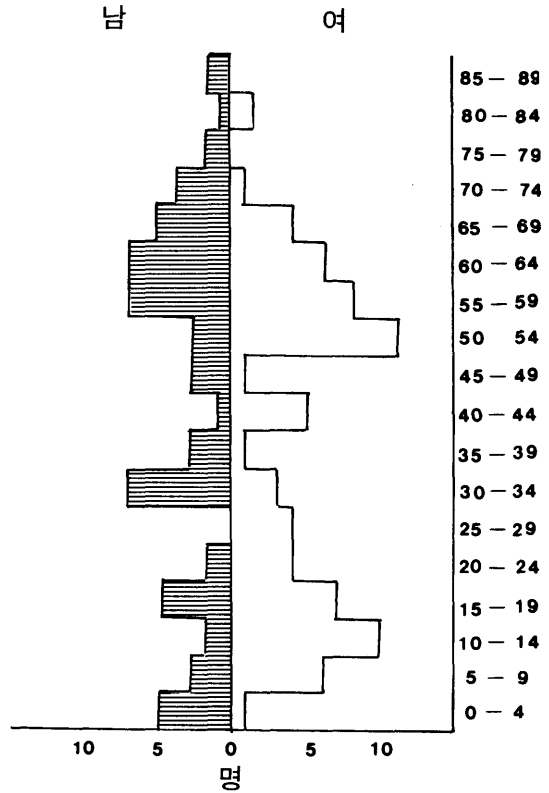


그림 2. 조사마을의 인구구조

외지인의 이용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최근 타지인의 출입이 다소 많아지고 외지인의 토지매입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작년에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계곡 안쪽의 상당수 경지가 피해를 받았고, 조사할 당시까지도 복구가 되지않은 채 방치되어 그대로 묵정밭이 되고 있다.

조사마을은 1992년 7월 현재 주민등록 상 총 4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42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두 가구는 비농가³⁾이다.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총인구 136명 중 여성의 비율은 54.4%에 해당하며, 50세 이상이 47.8%에 이른다. 10대의 여성인구와 30대 초반 남성인구가 다소 거주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연령층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참조)

3) 비농가 2가구 중 한가구는 양봉을 하는 가구이라는 점에서 농업센서스 상의 농가 정의에 따르면 농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본 조사에서는 비농가로 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비농가는 인근 남원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가구이다.

표 1. 농촌인구 및 가구수 변화추이

구분 연도	전국인구 (千名)	농가인구 (千名)	농가 가구수 (千名)	가구당 농가 인구(千名)	농가인구유출량(예상)	
					기 간	인구수(千名)
1960	24,989	14,559	2,350	6.20		
1965	29,193	15,812	2,507	6.31	'61-65	1,206
1970	31,466	14,422	2,483	5.81	'66-70	3,309
1975	34,707	13,244	2,379	5.57	'71-75	2,561
1980	37,436	10,827	2,155	5.02	'76-80	3,384
1985	40,448	8,521	1,926	4.42	'81-85	2,911
1990	43,520	6,661	1,767	3.77	'86-90	2,279

주: 1. 농가인구유출량 = 예상농가인구 - 실제농가인구.

2. 예상농가인구 (P₂) = 전년도 농가인구 (P₁) × 인구증가율 (r₁).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한국통계연보』, 각년도.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부』, 각년도.

2. 韓國農村의 變化樣相과 休耕化

1) 農村의 變化樣相

(1) 農村人口와 農業勞動力 變化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농촌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양상은 농가인구의 급속한 감소이다. 전국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반면, 농가인구는 1967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되어 1990년에는 6,661천명으로 1965년 인구의 42%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절대감소는 주로 이농인구에 의한 것으로 정부통계에 따르면 1961-90년간 약 1,570만명 정도가 유출되었다. 이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50만명 이상의 인구가 이농한 셈이다(표1 참조).

이농은 가구원전체가 이동하는 『全家口離農』과 함께 가구원의 일부만 이동하는 『部分家口離農』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양자는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을뿐 아니라 농업에 미친 영향도 상당히 다르다. 즉 농업노동력 문제와 관련하여 전가구이동은 주로 농업노동력의 총량적 감소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으나 부분가구이동은 그 選別性으로 인해 노동력의 고령화, 여성화, 영농후계자 부족 등 질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진다. 이 두가지 이

동유형의 전개양상을 밝히기 위해 『인구및주택센서스 보고』의 ‘인구이동’ 자료를 토대로 추정 한 결과, 1966-70기간에는 전가구이동(기혼자)이 49.7%, 부분가구이동(미혼자)은 44.5%였으며 1970, 80년대에는 부분가구이동(미혼자)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러한 離村向都의 인구이동은 자연히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야기하게 되었는데, 영농종사자수가 1968년 평균 3.00명에서 1988년 2.33명으로 줄었고 특히 70년대 후반에 급격히 감소되었다. 더욱이 연령별 농가구원수 변화를 보면, 60세이상의 가구원수가 '65년 0.47명(전체 가구원수의 7.5%)에서 '88년 0.61명(전체 가구원수의 14.3%)으로 늘어나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55세이상의 노령층의 농가경영주가 60년 24.0%에서 90년 47.7%로 크게 증가한 반면, 청장년층으로 볼 수 있는 45세 미만의 연령층은 '65년 50%에서 '90년 24%로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 농촌의 노동력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한 선별적 이농에 의해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농업노동력, 특히 농가경영주의 고령화는 영농규모축소 및 이로인한 임대료증가, 신기술도입에 대한 소극적 반응, 농기계 보유 및 이용저조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4) 인구이동(이농)은 『5년전거주지(郡部) → 현거주지(市部)』의 자료임.

한편 노동력부족은 부녀자의 농업노동참여를 확대시켜 '65년 총투하노동의 27.5%에서 '88년에는 46.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족노동내에서 여성노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30.3%에서 42.5%로 증가하였다.

또한 노동력부족 및 질적저하, 특히 경영주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농촌문제는 영농후계자 부족현상이다. 1990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농가 1,767천 가구 중 83.6%인 1,477천 가구가 후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후계결정가구의 25%가 비동거후계자로 나타났다.⁵⁾ 향후 농가의 영농후계자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런 현상은 농업노동력부족 및 질적저하와 함께 작용하여 상당한 農家消滅 및 非農家化, 그리고 이들 가구의 경지처리문제, 특히 휴경화의 광범위한 진행이 예상된다.

(2) 農地賃貸借 및 所有構造의 變化

196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는 토지수요를 확대시켰고 이에 따라 지가가 급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지가양등의 추세 속에 농지가격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런 지가상승은 농지소유 및 이용형태에 영향을 미쳐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는 매입이 아닌 임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고 농지도 영농보다는 재산증식 혹은 보유의 목적으로 구입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특히, 農業勞動力의 不足 및 高齡化, 離農家口의 賃貸優先 傾向은 전체적으로 임대농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농지임대차의 추이를 보면 1962년 농지임차면적 291천ha(총경지면적의 14.1%)에서 1988년 744천ha(총경지면적의 34.8%)으로 1960년대 이후 총농가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임대차면적은 크게 증가했다.

농지소유에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농지중 86.3%가 농민에, 13.7%가 비농민에 의해 소유된 것으로 나타났고 소유농지의 취득경로 및 임대율을 보면 농민소유농지는 상속이 57.9%, 매입이 41.0%인데 반해 비농민소유농지는 53.1%가 양도(상속 + 증여)로, 46.9%가 매매를 통해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비농민소유농지의

표 2. 직업별 소유농지의 취득경로 및 임대비율(%)

직업별	취득경로				임대비율
	상속	증여	매입	계	
농업	57.6	1.1	41.0	100.0	10.9
비농업	51.6	1.5	46.9	100.0	71.0
총계	57.0	0.7	42.3	100.0	19.2

출처: 김성호 외, 1983, 농지소유제도의 관한 조사연구, 농촌경제연구원.

71.0%가 임대되고 있으며 投機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不在地主化되는 현상과(46.9%가 매입으로 취득), 이농자나 그 상속자가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여 부채 혹은 在村賃貸農化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2) 休耕化樣相과 그 發生要因

우리나라 농촌의 휴경지는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1991년 현재 약 6만 7천ha로 전 경지의 3.2%에 달하며 매우 급속하게 늘고 있다. 1988년까지 2만ha를 밀들던 휴경지는 1989년부터 매년 35-67%의 높은 비율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전체 농지면적중 휴경지의 비율이 1988년까지의 1%미만에서 1990년의 1.92%, 1991년의 3.2%로 높아졌다. 이러한 농촌의 한계농지의 유희화는 지역특성(山間地·中間地·平野地)에 따라 또한 농촌의 노동력과 농업기계화 작업조건에 따라 지역간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경사도가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골짜기 논밭이 많고 경치가 좋은 곳의 농지가 도시사람 등의 손에 많이 넘어간 강원도의 휴경율이 6.9%로 높았고, 경기도(4.5%)도 많이 나타난다. 휴경농지 67,000ha 중에서 산비탈의 限界農地가 40,000-45,000ha(59.7-67.1%), 도시근교의 비옥한 휴경지가 20,000-25,000ha(29.9-37.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⁶⁾ 이러한 분포양상을 두고 볼 때, 우리나라의 휴경지는 농업노동력부족과 투기적

5) 농수산부, 1990, 농업총조사.

6) 1991년 7월, 전국 36,000 표본조사구의 현지조사의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

표 3. 연도별 휴경면적 추이

단위: 千ha

연 도	1987	1988	1989	1990	1991
총경지면적(A)	2140.0	2143.4	2137.9	2126.7	2108.8
휴경면적(B)	19.8	19.3	26.1	40.4	67.5
A/B(%)	0.9	0.9	1.2	1.9	3.2

자료: 서울신문, 1992. 5. 14.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휴경화는 자연재해 혹은 지력의 쇠퇴 등 농업생산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산업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현상과 결부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社會的 休耕(sozial brache)이라 할 수 있다.

社會的 休耕이란 용어는 1950년대 독일의 고도성장기에 非農業雇傭機會가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른 兼業農家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휴경현상을 두고 독일의 Kröcker, U.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뒤 1956년 Hartke, W.에 의해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졌다. Hartke는 1950년대 독일농촌에서 취업구조가 비농업부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전의 경지가 휴경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종전의 삼포식 농업에서 나타나는 휴경과 다른 맥락에서 연유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휴경이라고 하였다.⁷⁾ 그는 이러한 사회적 휴경현상을 고도성장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대표하는 지표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휴경현상은 비단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구전역에서 일어났으며, 사회적 휴경이 일어나는 곳에는 예외없이 專業農이 급격하게 줄고, 兼業과 趣味農業(hobby farming)

이 성행하는 지역이었다.⁸⁾ 사회적 휴경의 발생은 농업노동력이 비농업부분으로 유출되면서 농업노동력의 질적, 양적 감소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이와같이 농업노동력의 유출을 매개로 휴경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시주변부의 농촌, 과거 小農이 지배적인 지역으로 공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농촌지역, 관광지가 발달하는 농촌지역 등 비농업 취업기회가 많은 지역에서 휴경지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Wild는 사회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개별농가 수준에서 휴경지가 나타나게 되는 메카니즘을 가설로서 제시하였다.¹⁰⁾ 그는 사회적 휴경은 가구주의 겸업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家族農의 형태를 띠는 小農家口의 경우, 家口主의 生涯週期에 따른 가구내 가구원간의 職業分化도 휴경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이 가설에 의하면 농가는 가구주생애주기에 따라 『專業農段階 → 初期轉換段階 → 後期轉換段階 → 完全離農段階』의 4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별로 가구원의 직업구성, 가구소득에서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차이를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총 소유지 중 경작 및 휴경비율도 차이를 보이게 되고, 최종적으로 가구주가 은퇴하는 '완전이농단계'에 가면

李翰邦, 1991, "限界農地 再開發 方案 및 農業振興地域 管理 運營," 農漁村研究院, 農業振興地域 指定에 따른 農地管理 및 利用에 관한 研究, p.6-7.

7) Hartke, W., 1956, "Die Sozialbrache als Phänomen der geographischen Differenzierung der Landschaft," *Erdkunde* 34, ss. 257-269(小林好二, 1990, 變貌する西ドイツの都市と農村-新たな地誌學的研究-, 古今書院, 東京, pp. 259-260에서 재인용).

8) Michael Pacione, 1984, *Rural Geography*, London, Harper & Row, pp. 74-75.

9) 小林好二, 1990, 앞의 책, p. 262.

10) Trevor Wild, 1983, "Social fallow and its impact on the rural landscape," in Trevor Wild(ed.), *Rural and Urban Change in West Germany*, pp. 202-205.

농지는 전면적으로 휴경화된다. 즉,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고 성장한 자녀가 비농업부문에 취업함으로써 자가농업노동력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이 가구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게되는 과정에 연관되어 소유지의 휴경화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는 농업을 둘러싼 제 조건이 독일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농은 거의 이촌을 의미하며, 이농민과 재촌농민 모두 강한 土地保有性向을 가지고 있고, 농업에서의 은퇴가 정책적으로 유도되기보다는 가구주의 노동능력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Wild의 가설을 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별농가의 휴경지 발생과정이 서구와 다르게 이루어질 것이며, 휴경지의 분포도 도시 및 공업지역과의 인접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도시 및 공업지역과 거리가 먼 遠隔地 農村으로서 경지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인구감소를 보다 먼저, 그리고 보다 대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이촌가구의 소유지를 중심으로 대량의 임대지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과 자녀의 이촌으로 경영주부부의 노동능력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在村農家の 賃借能力은 한계가 있어 부채지주토지를 중심으로 選別的 休耕化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반드시 임대 혹은 임차농지만이 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소유의 농지라도 여건이 불리할 경우 선별적으로 휴경화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¹¹⁾ 현재 농촌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50대이상의 연령층은 기계화와 같은 혁신적 영농을 하기보다는 자가노동력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踏襲的 營農을 지속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대

부분의 농가가 후계자가 없어 조만간 영농의 단절이 불가피하게 될 형편이어서 이들 농가에 의한 영농확대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고령의 경영주농가는 자가소유지만을 제한적으로 경작하거나, 조건이 나쁜 경지의 경우 노동력 수요가 거의 없는 永年作物을 재배하거나¹²⁾ 휴경할 가능성이 짙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가설적인 휴경화발생 메카니즘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극심한 이농현상에 따라 농업노동력의 총량적 부족, 질적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임대차를 통한 농지유동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농촌내부의 경작능력의 감퇴로 임차능력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성적 농지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 결과 물리적 조건이 열악한 토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휴경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부채지주토지는 휴경의 우선적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개별농가의 측면에서 보면, 가구주연령이 높고 자녀의 이촌으로 자가노동력이 취약한 농가일수록 가구소유농지의 경작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영농후계자가 없어 농가 자체가 해체될 지경에 이른 농가에서는 휴경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3. 調査地域의 休耕化樣相

1) 休耕地 現況

군행정자료에 의하면 長水郡의 휴경지면적은 총 경지면적의 1.8%정도이며 밭보다는 논에서 그 휴경비율이 높게 나타난다(표 4). 조사마을이 속한 繁巖面의 경우도 장수군 전체의 양상과 유사하다.

이러한 장수군의 휴경지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그 산

11) 선별적인 휴경화의 결정에는 농지의 물리적, 자연환경적 요인, 즉 농지의 비옥도, 경사도, 농가로부터의 거리, 농지의 규모 등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12) 일본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농가가 겸업화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밭, 대추와 같은 영년작물의 재배지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笠間 悟, 1980, “都市近郊地域における 農家の 變貌-大阪市東淀川區を 事例として,” 人文地理, 第32卷, 第4號, pp. 79-91.

小林好二, 1979, “近郊農業の諸相と 研究課題,” 人文地理, 第31卷, 第4號, p. 356.

표 4. 장수군의 휴경지 현황

단위: ha, (%)

	총경치	휴경 연도별				휴경 원인별				
		면적	계	90 이전	91	92신규	영농여건불리	노약자	부채지주	기타
장수군	전	3,283.0	47.3 (1.4)	32.0	11.1	4.2	25.7	4.0	15.5	2.1
	답	5,276.0	108.3 (2.1)	53.6	26.9	27.8	66.4	7.8	29.1	5.0
	계	8,559.0	155.6 (1.8)	85.6	38.0	32.0	92.1	11.8	44.6	7.1
번암면	전	379.0	1.7 (0.4)	0.4	1.3	-	0.3	0.4	1.0	-
	답	621.0	15.4 (2.5)	4.3	2.6	8.5	8.9	1.1	5.4	-
	계	1,000.0	17.1 (1.7)	4.7	3.9	8.5	9.2	1.5	6.4	-
조사마을	전	21.5	8.0(27.3)	-	-	-	-	-	-	-
	답	30.2	7.0(23.5)	-	-	-	-	-	-	-
	계	51.7	15.0(29.2)	-	-	-	-	-	-	-

자료: 장수군청 행정자료, 단 조사마을의 경우는 이장자료와 농지원부 상에 나타난 논, 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주: 조사마을의 경우 499필지 중 미확인 33필지를 제외한 수치임.

정방법 등의 차이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장수군의 휴경화 정도는 영농여건이 극히 불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행정자료상의 비율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지조사 결과 조사마을의 휴경지는 총 경지의 29.2%에 이르러 조사마을이 장수군과 번암면 중에서 특히 산간지역에 해당한다는 점과 조사방법상의 차이¹³⁾를 감안하더라도 행정자료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행정조사가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닌가 여겨진다.

조사마을에서는 논과 밭 사이의 휴경지비율은 장수군 전체의 경우와 달리 논과 밭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논과 밭 사이에 휴경지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조사마을의 경우 경지에 대한 接近도가 불리한 필지가 논과 밭 구분없이 많으므로, 휴경화정도가 논과 밭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거의 무차별적으로 휴경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휴경지의 분포는 농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을내 主道路에서 먼 곳에 집중적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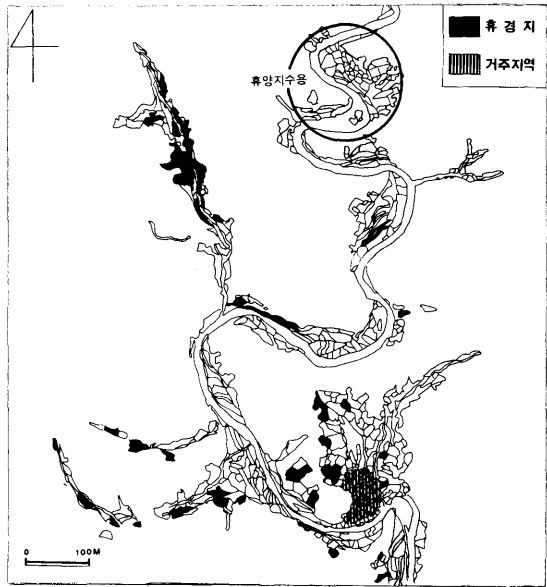


그림 3. 휴경지 분포

타나고 있다(그림 3 참조).

한편, 휴경원인으로서 장수군, 번암면 모두에서 營農與件不利(각각 59.2%, 53.8%)와

13) 본 조사에서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목상 임야로써 경지로 이용되는 필지는 제외하였다. 후자에 해당하는 임야는 약 21,728평으로 전체경지의 약 12.2%에 이르고 있다.

표 5. 소유자 거주지별 휴경면적

단위: 평

		경작	휴경	계
조사마을	전	24511	9879	34390 (41.3%)
주민소유지	답	43178	5632	48810 (58.7%)
계		67689 (81.4%)	15511 (18.6%)	83200 (100.0%)
부재지주	전	16276	14434	30710 (41.6%)
소유지	답	27122	15954	43076 (58.4%)
계		43398 (58.8%)	30388 (41.2%)	73786 (100.0%)

자료: 농지원부 및 이장자료.

不在地主(28.7%, 37.4%)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필지가 휴경하게 되는 데는 영농여건불리 요인과 부재지주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2) 休耕地 發生要因

(1) 休耕化와 所有關係

그림 4는 不在地主所有地の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부재지주소유지가 居住地域과의 遠近에 관계없이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사지역의 경우 적어도 賣買를 통한 耕地集團化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한편 휴경화의 내부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조사마을 주민의 소유경지와 부재지주소유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5 참조). 그 결과 在村家口의 소유지의 경우는 소유면적의 18.8%정도가 휴경되고 있는 반면, 부재지주소유지의 경우 41.2%라는 높은 비율로 휴경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휴경지 중 부재지주소유의 휴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6.2%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부재지주의 경지에서 휴경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전반적인 농촌노동력 부족과 더불어 自耕地보다, 그동안 賃借되어 오던 不在地主土地에서 먼저 휴경화가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결론으로 유도된다. 재촌가구의 상당수가 自家勞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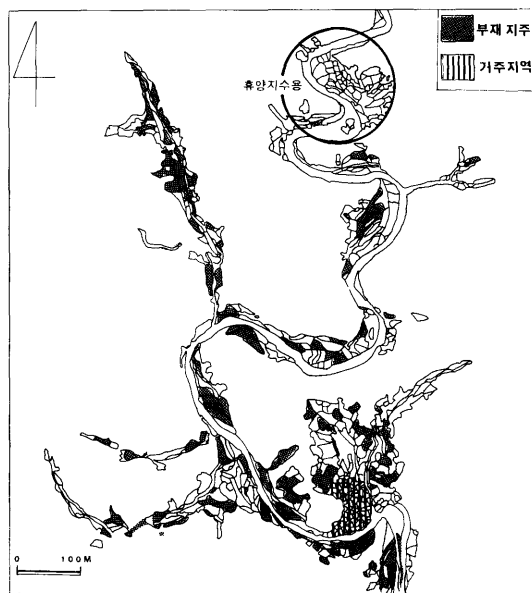


그림 4. 부재지주소유지 분포

력을 거의 상실한 限界農家에 가까워 임차능력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소작료의 저하¹⁴⁾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조사마을의 경지조건이 대부분 열악하다는 점에서 부재지주토지는 휴경의 우선적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재촌가구의 소유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 조사마을의 유휴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

14) 소작료가 전혀 없는 경우도 일부 있으며, '인사치레 정도 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노임이 높고 소득은 낮아, 적은 소작료도 부담이라고 말하고 있다.

표 6. 인구추이 및 연평균 증감율

구 분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전국(千)	29193	31466 (1.87)	34707 (1.96)	37436 (1.51)	40448 (1.55)	43520 (1.46)
전국군부	19387950	17859807 (-2.05)	17910361 (0.06)	16002199 (-2.25)	14005506 (-2.67)	11122690 (-4.61)
장수군	81143	74693 (-2.07)	73128 (-0.42)	57820 (-4.70)	47393 (-3.98)	34165 (-6.54)
변암면	12740	11559 (-2.43)	11045 (-0.91)	7898 (-6.71)	6215 (-4.71)	4334 (-7.21)

자료: 한국통계연감, 장수군 통계연보.

표 7. 재촌 휴경가구의 현황

가구순번	소유필지수	경작필지수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소유면적	경작면적
1	9 필지	5 필지	86세	2명	3016평	1707평
2	8	7	58	6	3511	2417
3	11	5	67	2	2565	1554
4	8	3	81	2	2245	986
5	5	17	37	3	1223	7091
6	5	12	58	3	1684	3141
7	4	5	57	1	1131	1508
8	5	2	55	1	2268	643
9	5	8	71	2	1769	2592
10	10	13	60	6	2147	3159
11	3	0	45	6	904	0
12	3	2	88	2	843	362
13	8	5	56	1	2358	1361
14	4	3	45	8	1915	1348
평균	6.29	6.21	61.7세	3.21명	1969.9	199.6
전체평균	4.43	6.45	59.9세	3.22명	1849.0	1880.4

자료: 주민등록대장 및 설문조사.

을 여지가 상존함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소유 관계에서의 문제는 현 농촌의 큰 문제중의 하나인 노동력 부족과 함께 연계되어 계속 農地 休耕化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2) 休耕化와 家口 및 耕地特性

앞서 살펴본 부재지주로 인한 휴경화의 양상은 결국 노동력부족이라는 측면과 그 궤를 같이한다. 즉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절대수의 부족이라는 노동력 문제로 인해 현 농촌의 휴경

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조사마을의 인구도 한국농촌의 일반적인 변화와 마찬가지로 많은 노동력의 부족을 경험하였다. 조사마을의 구체적인 시계열 자료는 없지만, 면 전체의 인구변화추세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표 6). 즉 변암면의 경우 전국 군부보다, 그리고 장수군 전체에서 비하여도 그 인구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마을에서 휴경을 하고 있는 가구(이하 休耕家口)는 총 40농가 중 14가구로 파악되었

표 8. 조사마을의 가구원수 분포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계
마을 전체	4	15	5	7	4	4		1	40
휴경지가주	3	5	2			2		1	14

자료: 주민등록대장 및 설문조사.

다. 이들 휴경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3.21 명으로 마을 전체의 3.22명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의 질적 측면에서는 휴경가구와 비휴경가구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가구주의 연령이 휴경가구가 약간 높게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표 6 참조).

한편 휴경가구의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인 가구 이하에서 휴경이 특히 많이 발생하였다. 평균가구원수에서는 휴경가구와 비휴경가구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가구원수별 분포를 보면 휴경가구에서 3인 이하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6인 이상 휴경가구도 4가구나 된다. 그러나 이들 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노동력의 질이 낮은 가구들로 보인다.¹⁵⁾ 이 결과로 미루어, 농업종사자가 高齡의 家口主夫婦에 국한되어 자가노동력이 양적, 질적으로 취약한 가구에서 휴경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7에서 보듯 휴경지가구가 타 가구에 비해 가구주 평균연령이 큰 의미를 가질만큼 높지 않은 반면, 그 외 소유면적과 경작면적의 경우 모두 마을 전체 가구평균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경작지 중 열등지를 중심으로 휴경화한다고 볼 때, 절대적으로 토지가 부족한 계층보다는 휴경을 하여도 생계의 위협이 적은 가구들에서 휴경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추세는 모든 계층에서 경지를 휴경화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소유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균 소유필지수에 있어서 휴경가구와

표 9. 휴경지와 비휴경지의 평균 필지면적

구 분	휴경지	비휴경지	전체 경지
면적(평)	290.13평	360.67평	337.33평

자료: 이장자료 및 설문조사.

전체가구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즉 휴경가구는 약 6.29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데 반해, 마을 전체평균은 4.43필지이다. 물론 이 차이는 非休耕家口만 조사하면 훨씬 더 큰 차이로 나타난다(3.44필지). 휴경가구가 타 가구에 비해 거의 두배의 소유필지수를 보인다는 점은 소유경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耕地分散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경지가 분산되어 있어, 주택과 가깝고 경지조건이 양호한 토지는 경작하는 반면 경지조건이 열악한 토지는 휴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물론 앞서 살펴본 노동력의 문제와 결합하고 있다. 또한 휴경이 일어나는 필지의 평균 면적은 전체경지의 평균면적이거나 비휴경필지의 평균면적보다 훨씬 작다(표 9).

이상에서 살펴본 조사마을의 휴경화는 크게 노동력부족과 경지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런 와중에 부재지주의 토지가 보다 많이 휴경하게 되고, 가구별로는 자가노동력이 취약한 고령의 가구주농가에서 휴경을 발생시키고 있다. 물론 농촌의 휴경화 현상은 단지 이러한 요소 뿐만 아니라 농촌내외적인 각종 요인들이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그 결과물이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공간적 현상이기도 하다.

15) 예를 들어 이 표에 있는 8인 가구의 가구는 가구주(45세)와 부인(42세) 사이에 딸만 6명이 있는 가구이고, 6인 가구의 경우도 가구주 부부외에는 노모와 어린 자녀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 가구 모두 실질적인 노동력은 가구주 부부에 국한된다.

3) 事例家口 考察

본절에서는 가구의 특성을 달리하는 농가의 사례를 통하여 각각의 농가에 있어서 농업경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고찰하고 소유경지를 휴경화하는 양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사례농가는 앞에서 언급한 Wild의 가설에 따라 가구주생애주기를 기준으로 각 단계의 농가유형에서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였다.

① A 가구

실질적인 경영주인 ㄱ씨는 올해 33세로 8대째 장수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다. 어머니(58세)와 부인(25세), 여동생(15세), 아들 2명, 딸 1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여동생 2명(각각 26세, 20세)은 취업을 하기 위해 타지로 나갔다. 농업에 참여하는 가구원은 경영주 자신과 부인 그리고 어머니 등 3인이다.

이 가구는 올해 논 5,600평, 밭 6,000평이며, 배추, 콩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없으며, 종답과 이촌한 친척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되고, 기계화수준이 영세한 대부분의 다른 농가와와는 달리, 이 농가는 경운기, 동력분무기, 동력탈곡기를 각각 1대씩을 가지고 농업에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典型的 專業農이다. 가구주는 자가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農業勞動所得도 적지 않게 올리고 있다.

② B 가구

이 가구는 가구주(59세)와 부인(51세)사이 2남 5녀가 있으나, 현재는 중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외에는 자녀 전부가 이촌하여 세 식구로 구성된 가구이다. 농업의 소득원은 없으며, 농업은 전부 가구주 부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가구는 논 2,200평(11마지기)과 밭 1,000평(5마지기)를 경작하고 있다. 그 중 논 3.5마지기과 밭 5마지기는 자가소유지이고, 나머지는 동생소유의 6마지기과 “시지답”(동네의 고사를 지내기 위해 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 1.5마지기이다. 밭은 전부 경사가 심하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 경작하기가 매우 힘들어 올

해는 ‘비교적 손이 덜 가는’ 콩을 심었다. 현재 이 가구는 농사를 주로 手作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작업의 경우는 이웃의 농기계를 빌려서 하고 있다.

휴경농지는 두 필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친척 소유의 반마지기의 논으로써 약 2년 전부터 휴경하고 있다. 이 필지는 토질이 비옥한 편이며, 농가와 가깝고 농로도 양호하지만 단지 관개가 다소 불편하다. 이와같이 전체적으로 경지조건이 양호한데도 휴경을 하게 된 근본이유는 노동력의 부족을 들고 있다. 휴경하는 나머지 한 필지는 직접 소유하고 있는 논 약 400평이다. 이 논은 산골 다랑논이라서 관개나 비옥도가 불편하고, 농로도 불편하고 거리도 매우 먼 필지이다. 이 필지는 노동력이 부족한데다 경지조건 자체도 열악하여 5년전부터 휴경을 해 왔다. 이러한 휴경농지를 향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가구주는 “힘이 없어서 앞으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휴경지를 팔 생각은 없으며 “나 죽으면 자식들이 어떻게든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③ C 가구

자녀(아들 3명, 딸 2명)들이 모두 출가 혹은 취업을 위해 이촌하여, 가구주(70세)와 부인(65세) 둘 뿐인 가구이다. 자가소유농지는 논이 2000평(3필지)이며, 밭이 1500평(4필지)이다. 농기계가 없어 논 약 1200평 정도는 경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웃사람을 고용(일당 4만원)하여 경작하고 있다. 소유지 중 논 1필지는 휴경하고 있으며, 밭에는 모두 콩을 심었다. 휴경하는 논 1필지의 면적은 362평이며, 논은 형태는 네모 반듯하고 관개 및 비옥도는 양호하나 거리가 멀고 농로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다. 6년전부터 휴경하기 시작했으며, 휴경직전에는 벼를 재배했다. 휴경을 하게 된 이유는 논으로 진입하는 농로가 불편해서 경작하기가 매우 곤란했기 때문이다. 휴경농지는 당분간 이용할 의사가 없고, 묵혀 둘 생각이며, 향후 농로가 개설된다면 개간할 의사는 있다고 한다. 휴경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로서 農路의 不便, 즉 農業基盤施設의 不備를 들고

있으나, 과거에는 그러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경작을 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결코 그 이유를 농업기반시설의 열악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D 농가

고령의 여성가구주(82세) 혼자만으로 구성된 在村脫農家口이다. 작년까지 아들가족과 같이 살면서 자가 소유지 논 2마지기과 밭 2마지기 외 소작도 많이 하였으나, 아들가족이 이주해 나감으로써 올해부터는 토지를 경작할 사람이 없어, 논 2마지기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밭에는 손이 덜 가는 콩을 재배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까지 맡아서 경작하던 친척 소유의 밭 300평은 그대로 묵히고 있다.

이상의 사례농가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향이 발견된다. 전체적으로 Wild의 가설에 어느 정도 부합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경영주가 젊은 가구에서는 기계화를 이루면서 적극적인 임차를 통해 적정한 규모까지 경작을 확대하고 있으나 (A 가구), 가구주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가 이촌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가구에서는 경작지 중 일부를 휴경화하거나(B, C 가구) 전부 임대하고 탈농하게 된다(D 가구). 또한 자가노동력이 취약한 가구에서는 현재 경작하고 있더라도 밭의 경우에는 노동력수요가 적은 작물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하고 있다.¹⁶⁾ 휴경지는 경지조건이 불량한 필지와 부채지주 소유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부채지주의 토지는 조금이라도 경지조건이 불량하면 휴경화되고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가 비록 친척간이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젊은 층이 임차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나 농작업의 일부를 수탁하고 있지만,¹⁷⁾ 이들 역시 경지조건이 양호한 필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임차 혹은 수탁을 하고 있어 향후 자가노동력이 부족한 限界農家가 증가하면서 대량의 휴경지발생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조사지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限界農地부터 점차로 휴경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이래로는 조건이 양호한 優良農地조차 휴경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부채지주의 토지는 극히 양호한 토지라도 휴경이 되고 있다. 현재 농기계가 다소 보급되었지만, 그것은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동력부족에 대처하는 소극적인 차원에 불과하여 한계농지와 부채지주의 토지는 앞으로 거의 휴경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농촌에 젊은 연령층의 노동인구를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營農後繼者의 養成과 機械化를 포함하여—이 農村政策의 優先順位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산간오지를 포함한 주변부 농촌의 농지이용이 거의 소멸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경지소멸은 食糧資源의 對外依存度를 급속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어느 시기에 이르면 食糧安保問題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곡물시장은 소수 국가와 다국적 거대기업에 의해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다.

4. 要約 및 結論

본 조사는 전북 장수군 반암면 사암리를 사례로 오늘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農村의 休耕現象에 대해 실증적인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조사 및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마을은 휴경지가 총 경지의 29.2%에 해당하여 전국적인 자료나 기타 공식적 자료에 비해 상당히 높은 휴경지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휴경지 문제가 적어도 遠隔地 山間農村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조사마을의 휴경지는 不在地主土地에서 두드러지게 진다. 즉, 부채지주토지 중 41.2%가 휴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지주소유의 휴경지가 전체 휴경면적의 66.2

16) 논인 경우, 경지조건이 그리 나쁘지 않으면, 기계화가 쉽고 농약살포 등으로 노동력이 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동력이용도 가능해서 자가노동력이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작이 가능하다.

17) “동네 농사는 젊은이 서너명이 다 한다”고 한다.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휴경지발생은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주로 賃貸地 중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조사지역에 국한해서는 부채지주토지 중 상당수가 경지조건의 양호를 무시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째, 조사마을의 휴경지는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家口特性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필지당 평균면적이 작고 소유필지수가 많아 耕地의 分散度가 클 것으로 보여지는 농가에서 다소 많은 휴경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양적인 지표에 의해 휴경지 발생가수와 기타 농가를 비교한 것으로서 보다 미시적으로 고찰하면 가구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뚜렷한 차이가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네째, 사례로 몇 가구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가구의 영농활동과 토지이용을 살펴 본 결과 가구주가 젊은 농가에서는 적극적인 임차를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전업농의 성격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가구주 연령이 높고

자녀가 이촌하여 자가노동력이 부족한 가구에서는 임대 및 휴경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후자 유형의 가구는 일부 경지에 콩과 같은 노동력수요가 작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이 경지는 향후 휴경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조사를 통해 농촌지역의 휴경지는 在村高齡家口의 所有地와 不在地主土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은 耕地의 賃貸가 休耕化의 前 段階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현재 농촌의 가구특성상 더욱 많은 부채지주와 한계농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휴경지발생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본 조사에서 고려하지 못한 휴경지의 물리적 특성과 휴경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 등에 대해 많은 자료의 구득이 요구된다. 이것은 차후의 과제로 미루어 둔다.